

요약

캐나다는 임시 거주자 확대 중심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수용 역량과 이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관리형 이민 정책으로 전환함. 임시 거주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영주권 중심 구조를 유지해 이민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러한 정책 전환 속에서 공공의료의 보장 공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영보험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 정부는 2025년 11월 발표한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 과거 경제 성장·인구 확대 중심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수용 역량과 이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관리형 이민 정책으로 전환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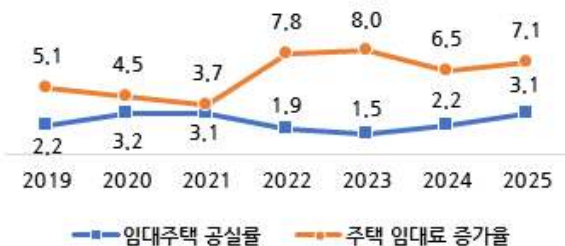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국제 학생·임시 근로자 등 임시 거주자 유입이 확대되었고 주택·의료·공공서비스 등에서 수용 역량의 한계가 누적되어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였으며 의료 이용 역시 크게 증가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 거주자 신규 입국 목표를 2026년 38.5만 명, 2027~2028년에 각각 37만 명으로 설정하고 임시 거주자 비율을 2027년 말까지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임
- 한편 영주권 중심 이민 구조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자의 약 64%를 경제 이민으로 배정하고 연방·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의료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필수 인재 유치를 확대함
- 또한 전체 입국자의 13%를 난민 및 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보호 지위가 확정된 거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영주권 전환을 추진할 예정임

〈그림 1〉 영주권자 및 임시 거주자 증가 추이 (단위: 만 명)



주: 임시 거주자는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임시 거주자임
 자료: Statistics Canada, "Population and demography"; Statistics Canada, "Immigration and ethnocultural diversity" 데이터

〈그림 2〉 임대주택 공실률과 주택 임대료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주택 임대료는 투룸 임대 아파트의 전국 평균 임대료임
 자료: CMHC, "Rental Market Survey Data Tables" 데이터

1) Government of Canada(2025. 11. 5.), "Supplementary Information for the 2026-2028 Immigration Levels Plan"

- 캐나다는 이민·체류 단계에서 건강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공의료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민영의료보험과 연방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분산하는 단계별·대상별 의료보장서비스 구조를 운영함
 - 공공의료는 지역별로 운영되며, 신규 이민자는 공공의료보험 자격 취득 이전 최대 3개월의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권장됨²⁾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방문 비자인 슈퍼 비자는 공공의료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입국 요건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캐나다 보험회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청(OSFI) 승인 해외보험회사 상품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함
 - 난민 및 보호대상자는 연방 임시 의료프로그램(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IFHP)을 통해 필수 긴급 의료서비스 중심의 제한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을 받음

- 임시 거주자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적용 기준과 가입·대기기간 등 제도의 공백으로 단기 민영의료보험 시장은 단순한 이민 규모 감소와 무관하게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가 임시 거주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에도 약 300만 명의 임시 거주자가 체류 중이며, 원칙적 공공의료 비적용과 지역별 제도 차이로 단기 민영의료보험 수요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학생의 경우 지역별로 공공의료 보장 구조가 상이해,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에서는 대학 단체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BC주와 앨버타주에서도 일정 기간 이상 체류 시 공공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 전 대기기간 동안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권장됨
 - 임시 근로자와 졸업 후 취업비자(PGWP) 소지자는 요건 충족 시 공공의료 적용이 가능하나, 직장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대기기간,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민영의료보험을 통한 보장 공백 보완이 일반적임

- 영주권 중심의 관리형 이민 정책 전환으로 공공의료 적용 대상 인구는 확대되나, 공공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한계로 민영보험 수요는 단기 의료보험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기 보장성 보험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영주권 중심 이민 구조로 장기 정착 인구가 증가할 경우, 의료 이용이 약제·치과·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며 단기 민영의료보험을 넘어 중·장기 보장성 보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캐나다는 2023년 기준 처방약 지출의 공공보험 보장률이 42%에 그치고 치과 진료에 대한 공공의료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보장은 직장보험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임
 - 슈퍼 비자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법적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승인 건수가 2023년 약 7.3만 건, 2024년 약 5.4만 건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기준 충족 여부가 보험상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2) Caring for Kids New to Canada, "Health Insurance for Immigrant and Refugee Families"